

노동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연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ppraisal and Selection of Labor Records: Focusing on the Agency of Employment and Labor

곽건홍(Kwak, KunHong)**

1. 머리말
2. 노동사 주제 분류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3. 노동사 주제에 기반 한 기록 선별
4. 행위주체에 기반 한 기록 선별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역사·철학상담학과 교수.

■ 투고일 : 2017년 12월 30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1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월 17일

〈초록〉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등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생산한다. 그러나 노동사 관점에서 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충분한 기록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거시사와 미시사를 고려한 노동사 관점에서 주요 주제와 행위주체를 분류하고, 각각의 주제별로 장기간 보존이 필요한 기록을 예시하였다. 아울러 기록관리기준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기록 보존기간의 과학화, 연구가치 관점의 ‘주제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등 주제 기반 평가 기준 구축, 기능과 주제를 결합한 기록 평가·선별 전략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록관리기준표, 노동기록, 노동사, 선별, 평가

〈Abstracts〉

The Agency of Employment and Labor produces various records that are related to labor history subject while performing its functions such as labor supervision. Some valuable records were discarded even if they are worthy enough to be research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u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classifying the main subjects and the main agents of an action in view of macrohistory and microhistory. Some examples of the records that require prolonged preservation were also presented by each issue.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s a dramatic improvement of the records schedule. It also presents other issues as the foundation of the valuation standard based on the subject including the conversion of the strategy of archival appraisal, and selection that combines the function and the subject.

Keywords : records schedule, labor records, labor history, selection, appraisal

1. 머리말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선별 업무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기초로 수행되고 있다. ‘업무에 기반 한 기록관리’를 지향하는 현재의 기록관리 체계에서 기록 평가·선별은 업무분석을 통한 기능의 도출, 기능에 따른 보존기간의 책정이 그 핵심을 이룬다.¹⁾

그러나 현재의 공공기록 평가·선별 업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지니고 있다. 첫째, ‘업무에 기반 한 기록관리’가 지향하는 구조-기능에 기반 한 기록 평가 자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기록 평가·선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학 분야에서 구조기능주의는 거시사 연구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구조-기능에 기반 한 거시사 연구는 사건과 정책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여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삶이 배제된 역사 서술이라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곧 역사 서술에서 역사의 주체인 대중이 소외되는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기능에 기초한 기록 평가·선별 방법론을 지속한다면 아카이브에는 거시사 연구에 활용될 기록만 남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곧 아카이브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거시사 연구의 저수지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곧 현재의 기록관리기준표 제도는 “기능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기능평가”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최재희, 2014). 또한 보존기간-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을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존기간을 과학화하는 연구와 기록관리 현장에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산점과 처분시점에 대한 원칙 재정립” 등 기록처리일정표 재설계가 제안되었다(설문원 2006).

1) 기록 평가론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최재희(2011)의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회고와 전망’ 참조.

다음으로 보존기간 책정 기준의 역사적 연속성 문제이다. 곧 기록관리법 시행 이전 최초로 기록 보존기간을 자세하게 규정한 ‘공문서 보존기간 종별 책정기준에 관한 건(이하 공문서분류표)’과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에서 규정한 각각의 기록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어떤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은 계속해서 같은 보존기간을 채택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곧 공문서분류표,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 차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척되었으며, 상당 부분 과거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화령 2016; 오성진 2004).

셋째, 기록 평가·선별 절차의 실무적 문제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기록평가심의회를 통해 폐기 일정이 도래한 기록을 평가하고,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과 의견조회, 기록연구사의 심사, 기록평가심의회 심의로 이루어진 평가 절차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있다(김승태 2013). 또한 현재의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제시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적용하여 과거에 생산된 기록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기능평가방법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주제 중심의 기록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영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적용 문제를 검토하거나, 주제 기반 기록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김장환 2014; 정은봉 2013; 박지애, 임진희 2015).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주제 중심의 기록 평가·선별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

셀렌버그가 가치 평가개념에서 제시한 2차적 가치 가운데 ‘증거가치’는 ‘연구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연구동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 연구는 미시사·일상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역사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그러나 기록학의 평가·선별론은 역사학과 별개로 논의되고 있다. 역사 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록 평가·선별 방법은 결과적으로 아카이브에 정책·사건 중심의 기록을 축적할 것이다. 이는 아카이브와 역사 연구 사이의 괴리를 더 크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사 관점의 노동기록 평가·선별 전략을 서술하고자 한다.

최근 노동사 연구는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사로, 거대 담론에서 일상 담론으로”(정현백, 2009, 82),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과거 노동사 연구는 노동운동사 또는 노동조합사,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원 2007, 393). 곧 조직 중심의 노동운동사 연구, 노동조합 연구,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연구, 노동자 정치운동 연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해 노동자 대중들의 삶과 경험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사 연구는 구조적 측면보다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경험을 강조하고, 노동과 생활세계에서 노동자들의 일상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곧 평범한 노동자들의 일상과 삶, 노동자 의식과 문화, 비조직화 노동자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행위주체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 노동사 연구는 ‘제도와 운동’으로부터 ‘일상’으로 전환했다. 조직노동자가 아닌 각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이용되는 기록도 과거와 같이 문헌기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기록, 일기, 소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활용하고 있다(김원 2007, 393-394).

그러나 새로운 노동사 연구가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법, 그리고 제도의 중요성이 간과된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김진희 1999, 47).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거시사와 미시사의 관점을 결합하여 기록 평가, 선별 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노동청) 기록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사 기록이기도 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속한 지방노동청 기록은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역 아카이브에 남아야 하는 기록들이다. 따라서 지역 관점의 기록 평가·선별도 요구된다(현재열, 김호연, 양상현 2007).

이 글의 분석대상은 2014~2015년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폐기 기록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사 관점에서 지방노동청 폐기 기록을 검토하고, 노동사 주제와 행위주체에 기반 한 평가, 선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노동사 주제 분류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이 글에서는 노동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다수의 노동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다.²⁾ 노동사 연구의 범주는 대체로 노동운동사, 노동정책사, 노동자 생활사, 노동시장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사 주제 분류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으로, 노동정책은 노동통제, 노사관계, 노동법, 노동행정으로, 노동자 생활은 작업장 안 노동조건, 작업장 밖 노동자 생활, 노동자 문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1〉 참조).

한국의 노동사 연구는 거시사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합법칙적 발전을

2) 대표적인 참고문헌으로는 大河内一男, 吾妻光俊(1970) 『勞動事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1975) 『한국노동관계문헌목록』, 이광일 외(2003) 『한국노동운동관련문헌해제』, 정현백(1991)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송호근(1991)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한국산업사회연구회(1993) 『산업사회학 강의』, 최장집(1997)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안병직(1997)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이은진(1999) 『노동자가 빠진 수렁』, 김왕배(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광건홍(2001)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전순옥(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Tilly and Scott(1987) *Women, Work and Family*, 구해근(2008)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이경옥 외(2011) 『나, 여성노동자 2』 등이 있다.

규명하기 위해 노동조합사 및 노동운동사 연구, 노동시장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노동법을 비롯한 국가의 노동정책 연구 등 노동정책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노동자계급 형성 문제도 다루어졌다. 아울러 작업장 안팎의 노동자 대중의 존재형태에 대한 연구도 진척되었다. 곧 작업장과 노동과정, 임금·노동시간·노동환경 등 노동조건 연구, 의식주 등 노동자 생활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노동자 기술을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거시사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증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³⁾

그러나 미시사적 관점에서 노동자 생활, 노동자의 정체성과 의식, 노동자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김준 2010; 김원 2011). 이들 연구는 주로 구술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사 주제 분류를 토대로 먼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⁴⁾ 주제 분류표와 기능에 기반 한 기록관리기준표는 도출 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나, 주제를 통한 기록 선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방노동청 평가, 선별 과정에서 기록관리기준표가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1) 노동운동-노동운동(1차분류-2차분류, 이하 같음)

지역노동운동·여성노동운동 등 ‘노동운동’ 관련 단위과제는 존재하지 않

3) 예를 들어, 구술사를 이용한 『나, 여성노동자 1』(유정숙 외 2011)은 농촌에서 상경, 공장 경험, 민주노조 운동,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등을 묘사하고 있다.

4)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269호, 2016.6.28).

는다(〈표 1〉 참조).

2) 노동운동-노동조합

〈표 2〉에 나타난 [노동조합 관련 단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①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양 노총(주요연맹) 동향 파악 및 분석」이 유일하다. 곧 노동조합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의 노동통제 양상을 알 수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대한 동향 파악 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에 불과하다.

〈표 1〉 노동사 주제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노동운동	노동운동	민주노조운동		
		지역노동운동		
		여성노동운동		
		노동자정치운동		
		비정규직노동운동		
	노동조합	전국단위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노동단체		
		파업		
		단체교섭		
		단체협약		

5) 고용노동부 직제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노동동향의 파악·분석 및 관리, 노사단체에 대한 지도·감독”등이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 159호).

노동정책	노동통제	국가 수준 노동통제 전략		
		사업장 수준 노동통제	작업장 규율	
		노동통제 이데올로기		
		노동통제 조직		
	노사관계			
	노동법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동시장	노동력	진정·고소·고발		
		근로기준		
		노동위원회		
		노동이동		
	고용·실업	고용	여성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유년노동자	
기업내부 노동시장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		
		직업소개		
		고용대책		
		직업훈련		
노동자 생활	작업장 안 노동조건	실업대책		
		임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질병	
	산업재해			
	산업안전·위생			
	작업장 밖 노동자 생활	사회보험	노동과정	
			의식주	
			여가	
			소비	
생계비				
기정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연금·퇴직				
실업보험				
고용보험				
노동자 문화				
노동통계				

② [노동단체]는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및 분석」이 있으며, 이 또한 정 부가 어떻게 노동단체 동향을 파악하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지만, 보존기간 은 10년이다.

③ [단위노동조합] 관련 단위과제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 증빙성 기록 은 영구기록으로 책정하였다.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 지도」,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지도」는 준영구 기록이지만, 일반 「노동조합 운영 지도」는 3 년이다.

④ [파업]과 관련된 단위과제인 「노동쟁의조정 신청 사건처리」, 「노동쟁 의중재 신청 사건처리」 등은 영구기록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파업 통 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도별 노사분규 통계 취합 분석」의 보존기간은 5년 이다.

⑤ [단체교섭] 관련 단위과제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관련 법령 해석」만 영구기록이고,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지도(지방)」, 「임금교섭 동향 파악 정리」 등 생산현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5년이다.

요컨대 [노동조합] 주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는 일부 를 제외하고 모두 한시기록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기록은 국가 아카이브에 거의 남지 않게 된다.⁶⁾

노동조합 주체의 기록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곽건홍 2009, 80), 앞으로도 노동조합 연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록을 이용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기록관리기준표가 종전과 같은 보존기간을 채택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국가기록원 소장 노동부 기록(1963~1999년)은 '법규'계열, '소송'계열, '고용보험 산재보 험 운용관리'계열 기록이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관련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곽건홍 2014, 178-179).

〈표 2〉 [노동운동-노동조합] 관련 단위과제

2차 분류	3차 분류	4차분류	단위과제	보존기간	
노동 조합	전국단위 노동조합	민주노총	양 노총(주요연맹) 동향파악 및 분석	10년	
		한국노총			
		노동단체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및 분석	10년	
	단위 노동 조합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 지도	준영구
				공무원노조법 운영	영구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지도	준영구
				교원노조법 운영	영구
				노동조합 운영 지도	3년
				노동조합 해산 의결	영구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서 처리	준영구
				노동조합설립 신고, 변경처리	영구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영구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 권자 지명 의결	영구
				노동조합 지원	5년
				복수노조 관련 업무	5년
노동 조합	파업		노동쟁의조정 중재사건 통계처리 분석	영구	
			노동쟁의조정 신청 사건처리	영구	
			노동쟁의중재 신청 사건처리	영구	
			노사분규 사례집 발간	10년	
			노사분규 수습활동 전개	10년	
			노사분규 예방계획 수립	3년	
			연도별 노사분규 통계 취합 분석	5년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 일수 파악 관리	10년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지도(지방)	5년
				노동조합 운영 및 단체교섭 지도	5년
				단체교섭 지도	3년
				단체교섭 단체협약 관련 법령 해석	영구
				임금교섭 동향 파악 정리	5년
				임금교섭 타결 현황 관리	5년
				임금교섭 타결 현황 조사분석 발표	준영구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영구			

3) 노동정책-노동통제·노사관계·노동법(〈표 3〉 참조)

국가 수준의 노동통제 정책을 알 수 있는 [노동통제] 관련 단위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업장 수준의 노동통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단위과제인 「사업장 노동동향 관리(지방)」는 보존기간이 3년이다.

〈표 3〉 [노동정책-노동통제·노사관계·노동법] 관련 단위과제

2차 분류	3차 분류	단위과제	보존 기간
노동 통제	국가 수준 노동통제 전략		
	사업장 수준 노동통제	사업장 노동동향 관리(지방)	3년
		주요 사업장 노사분규 수습대책 수립 시행	10년
		취약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3년
노동통제 이데올로기			
	노동통제 조직		
노사 관계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 수립	영구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및 지도(지방)	3년
		공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지도	10년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 및 제도 연구개선	영구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신청 처리	영구
		공무원 노사관련 동향	10년
		교원 노사관계 정책 및 제도 연구개선	영구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 파악	10년
		노사협력관련 제도개선 연구조사	영구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통계 관리	5년
		노사협의회 제도관련 조사 연구	10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	10년	
노동법		근로기준법(임금·근로시간 제외) 질의 회시	준영구
		근로기준법 관련 지침 제개정 및 시달	준영구
		근로기준법상 시행규칙 개정	영구
		근로기준법 중 연소자 관련 법개정	영구
		근로기준법 중 연소자 관련 시행령 개정	영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영구
		노동조합설립 운영 관련 법령 해석	영구

② [노사관계 관련 단위과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 수립」,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 및 제도 연구개선」 등 제도·정책, 연구조사는 영구기록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생산현장의 노사협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 파악」(10년),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5년) 등은 한시기록이다.)⁷⁾

③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노동법은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들 노동관계법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시 등의 단위과제는 대부분 영구 또는 준영구로 책정하고 있다.

4) 노동정책-노동행정(〈표 4〉 참조)

① [근로감독 관련 단위과제는 지침·인허가 등은 준영구로 책정했으나, 생산현장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관련 사업장 지도」는 보존기간이 5년이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록은 법령 해석과 판정 업무 등을 영구기록으로 책정하였다.)⁸⁾

② [진정·고소·고발 관련 단위과제는 노동문제의 실상을 알려주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모두 한시기록이다.

③ [노동위원회] 관련 단위과제는 법령의 제·개정만 보존기간이 영구다.

7) 노사협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업무는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시행, 노사 상생·협력 지원,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등이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9호).

8)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청 직제는 “사업장 정기감독 계획의 수립”, “시행,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9호).

〈표 4〉 [노동정책-노동행정] 관련 단위과제

2차 분류	3차 분류	단위과제	보존 기간
노동 행정	근로감독	근로감독 점검계획 수립 및 조치	3년
		근로감독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준영구
		근로감독관련 인허가 및 심사업무(지방)	준영구
		근로감독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준영구
		근로감독행정 제도개선	영구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수립	10년
		적극적 조치관련 사업장 지도	5년
		적극적 조치관련 업무(지방)	5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10년
		노동쟁의 및 부당노동행위관련 법령 해석	영구
		부당노동행위 관련 업무	3년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영구	
	진정·고소·고발	고소·고발사건 처리	30년
		진정민원 조사처리	10년
		진정사건 처리	5년
	근로기준	근로기준 개선대책 수립 시행	영구
		근로기준 분야 예방 점검 계획 수립	5년
		근로기준연구회 운영	준영구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운영 지원	10년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영구
		노동위원회 통계처리 분석	5년

5) 노동시장-노동력-노동자 내부구성(〈표 5〉 참조)

① 노동사 연구에서 여성노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과 달리 여성노동자에 대한 단위과제는 모성보호, 실직 여성 지원이 대부분이다.

② 유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알 수 있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연소근로자 실태조사」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③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위과제는 제도개선, 법령 제·개정 등은 영구 기록이지만,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알 수 있는 「외국인 사업장 지도·점검」은 보존기간이 3년이다. 곧 이주노동자의 인권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다.

〈표 5〉 [노동시장-노동력] 관련 단위과제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단위과제	보존 기간
노동력	노동자 내부 구성	여성 노동자	모성보호 관련 제도운영	영구
			모성보호관련 제도운영(지방)	영구
			모성보호이행실태 지도점검(지방)	10년
			모성보호 제도 개선	영구
			여성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업무	3년
			여성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	30년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3년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지방)	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영구
			외국인근로자 취업 알선	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처리	3년
			외국인력 관련 각종 통계분석·관리	10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및 공표	30년
		외국인력 제도개선	영구	
		유년 노동자	연소근로자 보호지도	3년
연소근로자 홍보 관련 업무	10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3년			
연소근로자 실태조사	3년			
노동력	노동자 내부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	각종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의 하위규정 개선	영구
			근로자 파견사업 승인	10년
			비정규직 점검계획 수립 및 조치	5년
			비정규직 관리	5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개선계획수립 시행(지방)	5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개선계획수립 시행	30년
			비정규직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5년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구제 관련 정책수립 시행	영구
			비정규직근로자 정책의 수립 시행	영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영구
			파견사용업체 실태조사	30년

④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단위과제는 정책과 법령 개정 등은 영구기록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파견사용업체 실태조사」(30년)는 한시기록이다. 또 한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알 수 있는 단위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9)

9)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업무는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 지원·지도,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등이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9호).

(표 6) [노동자생활-작업장 안 노동조건-임금·노동시간] 관련 단위과제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단위과제	보존 기간
작업장 안 노동조건	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심의편람 발간	영구
			최저임금 의결 경위집 발간	영구
			최저임금 결정고시 및 홍보	영구
			최저임금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 제작 개정	영구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영구
			최저임금실태조사	영구
			최저임금 심의요청 및 의결안 접수	10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위원위촉 등)	30년
			최저임금 의결안 재심의 여부 검토	영구
			최저임금제도 운영지도(지방)	5년
			최저임금제도 개선계획 마련 시행	영구
		건설업 월평균 임금 고시	영구	
		사업체 임금실태 분석	5년	
		임금관련 주요 쟁점별 검토분석 정리	30년	
		임금관련 질의회시	준영구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운영	영구	
		임금제도 개선 대책 등 임금정책 수립 시행	영구	
	임금제도 실태조사 수행 및 분석 발표	10년		
	체불임금 현황 집계 및 분석	영구		
	노동시간		근로시간 관련 법령 해석 및 운용	영구
			근로시간 유연화 도입 지원	10년
			주40시간제도 도입지원(지방)	10년
			주40시간제도 도입지원	10년

6) 노동자생활-작업장 안 노동조건-임금·노동시간·노동환경
(〈표 6〉, 〈표 7〉 참조)

① [최저임금] 관련 단위과제는 대부분 영구기록으로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기록관리기준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 임금실태 분석」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생산현장의 구체적 임금실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② 생산현장의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위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질병] 관련 단위과제는 영구, 준영구기록이 대부분이다.

〈표 7〉 [노동자생활-작업장 안 노동조건-노동환경] 관련 단위과제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단위과제	보존 기간	
작업장 안 노동 조건	노동환경	질병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보급 및 확산	5년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제도 운영	30년	
			산업 보건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 등	준영구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기준 제·개정	준영구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사업	영구	
			진폐건강진단사업	준영구	
			진폐근로자 건강보호 및 지원(지방)	준영구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 보호	영구	
			특수건강진단 현황관리 및 점검	준영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체도 개선	영구	
			근로자건강진단 법령상담 및 질의 회신	준영구	
		산업재해	비정규직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5년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방지	5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실시	3년	
			산업재해 조사 및 현황 관리(지방)	5년	
		산업안전· 위생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관리	10년	
			산업안전법령·규정·지침 운용	영구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제도 운영(검찰합동점검)	3년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	30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제·개정 및 운용	영구	
			산업안전보건 법령 해석	영구	
			산업안전보건분야 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준영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관리	1년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영구	
			작업환경관리 법령 상담 및 질의 회신	30년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관리 내실화	3년	
			작업환경 측정 제도 관련	준영구	
			작업환경 측정기관 현황 관리 및 점검	3년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결정	30년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실시	5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발간	5년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30년

④ [산업재해] 관련 단위과제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실시」, 「산업재해 조사 및 현황관리(지방)」등 생산현장의 산업재해를

알 수 있는 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단위과제인 「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실시」,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발간」 등의 보존기간도 5년이다.

한편 [노동자생활-작업장 밖 노동자 생활] 관련 단위과제는 대부분 고용 대책, 사회보험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3) 의식주, 소비, 생계비, 노동자 가정생활을 알 수 있는 단위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가] 관련 단위과제는 「근로자 여가활용지원」(5년), [가정] 관련 단위과제는 「근로자 보육지원」(3년) 등이 있다.

노동통계 관련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통계에 해당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 실시」(10년), 「연도별 노사분규 통계 취합 분석」(5년) 등은 한시기록이다.

〈표 8〉 [노동통계] 관련 단위과제

1차 분류	단위과제	보존 기간
노동통계	매월 노동통계조사 실시	10년
	매월 노동통계특별조사 실시	10년
	산업재해 통계 분석 및 유지 및 조사연구	영구
	산업재해 통계 제도개선	영구
	연도별 노사분규 통계 취합 분석	5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실시	10년
	주요 노동경제지표 작성 발간	30년

요컨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에서 규정한 보존기간의 특징은 첫째, 같은 단위과제라 하더라도 중앙에 비해 지방의 보존기간이 짧다. 둘째, 생산현장의 구체적 노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위과제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한시기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종래와 마찬가지로 정부기록을 활용하여 노동사를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3. 노동사 주제에 기반 한 기록 선별

1) 노동운동 기록 선별

[전국단위 노동조합] 주제와 관련된 기록은 노동조합사를 구성하는 중요 기록이지만 폐기되었다(〈표 9〉). 곧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양 노총(주요연맹) 동향 파악 및 분석」(단위과제)은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으나, 민주노총·한국노총 관련 기록철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책정되어 모두 폐기되었다. 특히 광주지방노동청 생산 ‘민주노총동향’·‘민주노총현황사업장’ 등은 기록철 제목에서도 동향을 파악하는 기록임을 알 수 있으나 폐기되었다.

〈표 9〉 [노동조합-전국 노조]·[노동조합-파업]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주제	
중부지방노동청	한국노총	5	1	전국단위 노동조합	
부산지방노동청	민주노총관련	5	3		
광주지방노동청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해설집	5	1		
	민주노총참고철	5	1		
	민주노총동향	5	1		
	민주노총현황사업장	5	1		
	민주노총관련참고철	5	1		
	민주노총간담회철	5	1		
부산지방노동청	한국노총 장학생철	5	1		파업
	한국노총 장학생철	5	1		
부산지방노동청	민주노총총파업	5	2		
광주지방노동청	총파업관련(민주노총, 한국노총)	5	1		
	민주노총연대파업	5	1		
	민주노총파업일일보고	5	1		
	사업장별 노사분규 현황	3	1		
	장기분규사업장	3	1		
	발전산업노조파업현황	5	1		

〈표 10〉 [노동조합-단위노조]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충부지방노동청	한국통신 노동조합	3	1
	경인항운노조 03년 6월 조사건	3	1
	06년 노조 면담 등 관련자료	3	1
	2008 인천항운노조 지도, 점검 관련철	5	1
부산지방노동청	노동조합설립변경관계철	5	1
	노동조합관련철	5	2
	항운노조설립신고철	5	1
	노동조합정기현황	5	4
	부산지역버스노조	3	6
	09금속노조	3	2
	부산자유교원노동조합	5	1
	코모도호텔노동조합	5	1
	노동조합관리관계철	5	1
	한국증권선문거래소노동조합	5	1
	사회보험노조관련	5	1
	부산경남지역종합금융노조철	5	1
	교원노조관련철	5	1
	부산항운노조 등 관련 기록철	5	17
광주지방노동청	금호타이어	5	1
	동광주병원철	5	2
	금호석유화학	3	1
	조선대병원	3	1
	전국서비스유통노동조합	5	1
	건설운송노조철	5	1
	타워크레인노동조합관계철	5	1
	일신방직노동조합철	5	1
	광주시 택시노동조합	5	1
	광주시청비정규직노조	5	1
	광주지역 금속노동조합	5	1
	노동조합 관련철	5	1
	노동조합 현황 조사표	5	8
	노동조합업무관련철	5	1
	노동조합관계철	5	1
	노동조합현황	5	1
	일신방직노동조합철	5	1
	전국서비스유통노동조합	5	1
	타워크레인노동조합관계철	5	1
	관내노동조합현황	5	1
광주시 택시 노동조합 등 관련 기록철	5	22	

*주: 지면 관계로 유사한 유형의 기록철에 대해서는 '○○ 등 관련 기록철'로 표기하고, 기록철 권수는 합하였음. 이하 같음.

총파업과 관련된 기록도 폐기되었다 [민주노총총파업], '총파업 관련(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연대파업' 등]. 또한 생산현장의 파업 양상을 알 수 있는 '발전노조파업현황'·'사업장별 노사분규 현황' 등도 기록 평가 심의를 통해 선별되지 않았다. 요컨대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노동조합 기록, 파업 관련 기록은 노동운동사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록이므로 선별하여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다.

[단위 노동조합과 관련된 기록은 생산현장의 노동조합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96권이 폐기되었다.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에서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서 처리」는 준영구기록이지만, '노동조합설립 변경관계철'(부산지방노동청)은 보존기간 5년으로 책정되어 폐기했다. 노동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단위 노동조합 활동 기록은 선별하여 영구기록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¹⁰⁾

단체교섭권은 '노동3권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헌법에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김태기, 1993, 1). [단체교섭은 임금교섭과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이다(〈표 11〉 참조). 이들 기록은 지방노동청의 단체교섭 개입 정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영구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의 권리" 등과 관련된 교섭권을 가진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0, 19). 또한 단체협약은 '임금액, 임금 지급형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김중희 1995, 330-331).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만을 영구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된 '단체협약신고서' 등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기록이므로 영구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명 뿐만 아니라 기록철명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곧 '노동조합 관계철', '노동조합일반관계철', '노동조합업무관련철(이상 광주지방노동청)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기록철명이 혼재되어 있다. 다른 기록철명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다.

(표 11)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 기간	권	주제
충북지방노동청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표	5	1	단체교섭
	임금교섭 타결현황 조사표	5	1	
	임금교섭 타결 조사표	5	1	
부산지방노동청	08임금교섭영도구	5	1	
	임금교섭타결현황	5	1	
	03년임금교섭지도대상	5	1	
	임금교섭관계철	5	1	
	임금타결조사표	5	1	
	임금교섭지도철	5	1	
	임금교섭타결조사표	5	1	
	임금교섭타결지도현황표	5	1	
	단체교섭지도보고	5	1	
광주지방노동청	임금교섭지도	5	9	
	임금교섭지도대상	5	3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표	5	3	
	임금교섭 권고방향	5	1	
	임금타결현황조사표	5	1	
광주지방노동청	단체협약신고서	5	1	단체협약
	광주전남 향운노조 단체협약	5	1	
	광주전남본부 단체협약 요구안	5	1	
	단체협약서	5	4	
	협약서	5	2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타워크레인 협동 조합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5	1	
	단체협약심사	5	1	
부산지방노동청	한진중공업임단협협약서철	3	1	
	단체협약신고	5	1	
	단체협약신고서	5	30	
	단체협약	5	12	
	단체협약신고서	5	8	
	규약변경관계철	-	1	

2) 노동정책 기록 선별

제도·정책, 법률을 축으로 한 노동정책은 국가·자본·노동관계를 보여 주는 거시적 노동사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특히 생산현장에서 자본과 노동

관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수준 노동통제] 관련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 수준 노동통제]와 관련해서 폐기된 기록은 <표 12>와 같다. 지방노동청의 「사업장 노동동향 관리」(단위과제)는 보존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부관훼리동향철’·‘부산교통공사동향철’ 등).

그러나 ‘금속노조동향’·‘금호타이어동향철’ 등은 5년으로 책정되어 있다. ‘자체취약관련철’, ‘사업장 노동동향관리’ 등은 대량으로 폐기되었다. 생산현장의 노동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노동청 기록은 노동통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영구기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표 12> [노동통제-사업장 수준 노동통제]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 기간	권
중부지방노동청	뉴하이에스 노동동향	5	1
	타워크레인 노사동향	3	1
	롯데기공동향	5	1
	노사관계취약사업장 등 관련 기록철	3	4
부산지방노동청	부관훼리동향철	3	1
	노동동향	3	15
	노동동향 보고	5	4
	부산교통공사동향철	3	2
	금속노조동향 등 관련 기록철	5	3
	자체취약관련철	5	79
	노사관계취약사업장 등 관련 기록철	5	13
광주지방노동청	동향(금속노조등)	5	1
	금호타이어동향철	5	1
	로케트전기동향	5	1
	기아자동차노사동향	5	1
	노동동향(지방)	5	2
	사업장 노동동향 관리	5	29
	광주매일동향	5	1
	(합) 중앙고속 노사동향	5	1
	주간노사동향	5	28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동향)	5	1
	관내노동조합현황	5	1
	노동조합 현황 조사표	5	8
	동향(금속노조등)	5	1
타워크레인노조동향철	5	1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 서로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노동조합사전 간행위원회, 1988, 294). 노사협의회법에는 사업장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대체로 노사협의회 기능과 역할, 운영과 쟁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신권철, 2013; 황용연, 2011). 지방노동청에서 폐기한 기록은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신고’, ‘노사협의회점검’ 등 생산현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기록이므로 보존기간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표 13〉 [노사관계-노사협의회]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 기간	권
충부지방노동청	노사협의회 운영실태자율점검표	5	1
	노사협의회규정	5	1
	노사협의회 중점지원대상	5	1
	노사협의회규정 신고	5	25
	노사협의회설치지도	5	1
	노사협의회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5	12
부산지방노동청	노사협의회철	5	1
	노사협의회관계철	5	3
	노사협의회점검표철	5	1
	노사협의회규정	5	13
	노사협의회관련철 등 관련 기록철	5	8
광주지방노동청	노사협의회 신고	5	3
	노사협의회 이행실태	5	1
	노사협의회규정	5	4
	노사협의회규정신고서철 등 관련 기록철	5	4
	노사협의회운영점검II 등 관련 기록철	5	22
	제2차정기노사협의회회의록	5	1
	노사정협의회	5	3
	노사정간담회	5	1
	노사정위원회	5	1

[근로감독은 지방노동청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곧 노동시간의 제한과 야간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부당해고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준

수 여부 등을 감독하는 것은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 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장근로감독종합계획관련철’ 등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 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들은 다수 폐기되었다(〈표 14〉 참조).

〈표 14〉 [노동행정-근로감독·부당노동행위] 관련 기록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주제	
충부지방노동청	취업규칙 지도 관련철	1	1	근로감독	
	노무관리지도관계철(노사지원과)	3	1		
	노무관리지도관계철(노사지원과)	5	1		
부산지방노동청	대우건설관련철	3	7		
	근로기준관계철	5	1		
	조선업종점검관련	5	2		
	대우버스점검, 복명철	5	1		
	사업장 지도점검	5	9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결과보고서	3	2		
	근로감독결과보고서	5	1		
	사업장감독관련평가및각종지시철	3	1		
	사업장근로감독종합계획관련철	3	1		
부산지방노동청	부당노동행위메뉴얼	3	7		부당노동 행위
	06부당노동행위신고사건철	3	1		
	07부당노동행위보고자료	3	1		
	2005년부당노동행위관련철	3	1		
	06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명령서	3	1		
	2004년부당해고결정서철	3	3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이행지도대장	3	1		
	2004중노위부당해고결정서철	3	1		
	부당노동행위사건철(I)	5	1		
	부당노동행위결정철	5	1		
	부당노동행위관련철	10	4		
광주지방노동청	부노 부해 관련철	5	2		
	부노 부해 관련 보고	5	1		
	부당노동행위신고사건처리대장	5	3		
	부당노동행위철	5	1		
	부당노동행위집중지도	5	1		
	부당노동행위사건철	5	2		
	부당해고 입건요망	5	1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가지로 방해, 지배, 개입, 탄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노동조합사전 간행위원회 1988, 25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록은 사용자 측의 노동 탄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며, 노동운동사 연구의 기초 자료이므로 영구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방노동청 폐기 목록에는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진정·고소·고발]은 구체적인 노동실태와 사용자 측의 노동통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15〉 참조). 특히 ‘타워크레인진정사건관계철’, ‘진정서/금호타이어(주)광주공장’ 등은 생산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진정, 고소, 고발 관련 기록 또한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표 15〉 [노동행정-진정·고소·고발]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중부지방노동청	신고사건처리대장	10	9
	신고사건처리철	10	184
	신고사건일반관련철	10	1
	내사사건관계철	10	2
	대덕프라임 신고사건	10	1
	진정사건(박○○)관련철	10	1
	진정사건조사철(진정인 왕○○ 피진정인 응진수협)	10	1
부산지방노동청	내사종결	5	1
	사건이송	5	19
	타워크레인진정사건관계철	5	1
	진정사건관계철 등 관련 기록철	5	369
	진정사건 처리	5	680
광주지방노동청	재진정서/금호타이어(주)	5	2
	신고사건처리대장	5	4
	신고사건처리대장(진정, 고소) 등 관련 기록철	5	4
	신고사건처리부	5	2
	신고사건처리전	10	26
	신고사건처리현황	5	1
	신고사건철	5	12

	진정서	5	4
	진정서(엘지칼텍스정유)	5	1
	진정서/광주과학기술원	5	1
	진정서/금호타이어(주)곡성공장	5	2
	진정서/금호타이어(주)광주공장	5	4
	진정서/전남대학교병원	5	4

3) 노동자생활 기록 선별

〈표 16〉 [작업장 안 노동조건-임금-체불임금]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중부지방노동청	추석절 체불임금 해산보고	5	1
	체불임금철(6) 9월-10월	5	1
	체불임금 관계철	5	1
	체불임금발급철	5	1
부산지방노동청	일등선박체불동향	5	1
	체불금품확인철	5	8
광주지방노동청	체불청산대책관련 민원상담일지 연말연시	5	1
	체불임금청산 및 발생보고(1)설	5	1
	추석대비체불관계철	5	2
	임금체불발생대장	5	2
	연말체불임금청산 및 발생보고	5	1
	체불임금청산 및 발생보고(2-4)	5	1
	체불청산처리현황보고	5	1
	[10억이상]체불동향관리철	5	1
	체불임금사업장카드철	5	1
	체불임금청산처리현황보고	5	1
	체불임금발생처리철	5	1
	체불임금발생처리철(2~4월)	5	1
	체불임금발생처리철(5~6월)	5	1
	임금체불취약업체관리대장	5	1

임금은 노동자 생활과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1년 현재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약 18만여 건, 체불액은 1조 1천여억 원, 체불임금 노동자는 27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체불현황에 대한 기초통계 조차 부족한 실

정이다(강승복 2012, 68). 또한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이 같은 사례로 묶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관련 기록은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하청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10%를 상회하고 있다(오상봉 2016, 51). 따라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지방노동청의 지도점검 기록은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7〉 [작업장 안 노동조건-임금-최저임금] 관련 기록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중부지방노동청	최저임금이행실태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5	42
	최저임금점검계획철	5	2
	최저임금 관계철 등 관련 기록철	5	13
	최저임금 현장점검	5	2
	최저임금취약사업장 예방 점검철	3	1
부산지방노동청	최저임금이행실태	5	11
	최저임금 지도점검	5	50
	최저임금 등 관련 기록철	5	37
광주지방노동청	최저임금 현장점검	5	2
	최저임금관련철	5	26
	최저임금의심사업장점검	5	2
	최저임금이행여부자체점검	5	1
	최저임금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5	43

산업재해의 원인은 대체로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노동조건, 관리감독 문제, 내재적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권순식, 2016, 173). 곧 산업재해는 작업장 내의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이다. 지방노동청 폐기 기록 가운데에는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산재은폐관련철' 등). 이러한 기록들은 생산현장의 노동환경을 증명하는 중요 기록이므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표 18〉 [작업장 안 노동조건-노동환경-산업재해]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중부지방노동청	사망재해취약유형별철	3	1	
	사망재해예방지도점검철	5	4	
	사망재해20대다발작업철 등 관련 기록철	5	7	
	중대재해처리대상 등 관련 기록철	5	2	
	중대재해발생보고철	5	4	
	중대재해관계철	5	1	
	재난위험사업장관리카드	3	1	
	산재은폐관련철	5	1	
	산재은폐조사철 등 관련 기록철	5	2	
	산재미보고관련조사철	5	1	
	산업재해예방특별점검철	3	1	
	연속재해발생사업장점검	3	1	
	50인미만중소사업장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3	6	
	재해발생사업장현황	5	2	
	산업재해발생현황철	3	1	
	산업재해조사표	5	1	
	산업재해올확인원	5	2	
	광주지방노동청	중대재해예방 특별점검	5	1
		중대재해사업장 시정결과	5	1
중대재해발생철 등 관련 기록철		5	5	
중대산업사고예방감독관리카드		5	1	
우○○(9.26) 중대재해 수사결과서		5	1	
사망재해취약사업장점검철		5	6	
사망재해안전진단		5	1	
사망재해관계철		5	2	
산업재해발생현황		5	1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련 기록철		5	3	
월별산업재해발생현황		5	1	
은폐조사 재해조사		5	1	
재해조사 의견서철		5	2	
재해조사처리 등 관련 기록철		5	3	
재해조사철 등 관련 기록철		5	4	
산재은폐접수대장		5	2	
산재은폐관련철		5	1	
산재은폐조사관련철		5	3	
신고사건철		10	19	
산재미보고조사철		5	6	
산재미보고조사철	5	2		
산재은폐관련철	5	1		

4. 행위주체에 기반 한 기록 선별

1) 여성노동자 관련 기록 선별

〈표 19〉 [여성노동자]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부산지방노동청	차별시정관련철	5	1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지시지침	5	2
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지도점검 등 관련 기록철	5	23
	고용평등위원회회의록	5	2
	고용평등위원회 등 관련 기록철	5	5
	고용평등상담실적보고철 등 관련 기록철	5	5
	고용평등관계철	5	1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일지	5	1
	고용평등모성보호지도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5	23
	여성차별해고신고대장	5	1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 상담실적관리대장	5	1

여성노동자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 임금 등 차별 문제, 건강, 노동운동, 정체성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¹¹⁾ 최근에는 여성노동자 수기·일기 등의 기록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노동청 폐기 기록과 관련이 있는 고용평등·모성보호 등에 대한 연구는 법제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다.¹²⁾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는 모성보호 제도 개선과 운영에 대해서만 영구 기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되었으며, 2007년 ‘남녀고

- 11)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성과는 제갈현숙(2014)의 ‘생활임금과 저임금 여성노동자’, 문은미(2014)의 ‘여성노동자 50년, 여공에서 워킹맘까지’, 신경아(2013)의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개인’의 의식’ 김효정(2010)의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박옥주(2016)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 이옥지, 강인(2001)의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등을 참조.
- 12)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는 박경순(2002)의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수연(2012)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 백진아(2002)의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등을 참조.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법률은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지방노동청 폐기 기록 가운데에는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관련 점검 기록(‘고용평등, 모성보호점검관계철’ 등), 여성차별 관련 기록(‘여성차별해고신고대장’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

2)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기록 선별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전개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문제는 고용 불안정, 법적 보호의 미비, 임금 격차 등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였다(조돈문 2011, 43-44).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다(장신철 2012, 58).

〈표 20〉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중부지방노동청	비정규직관련철(파견등 포함) 등 관련 기록철	5	9
	비정규직(공공)부분사업장점검 등 관련 기록철	3	3
	비정규직(민간)사업장감독 등 관련 기록철	5	5
	비정규직 신용불안 실태조사	5	1
	비정규직점검철	5	7
	비정규직근로자보호	5	1
	비정규직(공공)점검계획철 등 관련 기록철	5	2
	공공부문 비정규직예방점검	5	1
	비정규직(민간)점검계획철	5	1
	비정규직고용사업장점검철	5	13
	비정규직근로자안전보건점검관계철	5	12
	08 근로자 파견 분야 점검	3	1
	08사업장감독계획철	3	1
	사내하도급점검철(롯데쇼핑) 등 관련 기록철	3	16
파견사업체 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5	6	

	03년도 하반기 파견업체 점검철	5	1
	한화-에이스화학사내하도급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5	12
	대우 하도급 점검철 -동우공영-	5	5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5	1
	하도급업체 근로감독 점검철 <두산인프라코어(주)>	5	1
	사내하도급 점검결과 보고(자동차,기계, 금속 업종)	5	2
부산지방노동청	IT업종하도급점검	5	2
	사내하도급점검철	5	12
	근로자파견신규허가관계철/(주)승학	5	1
	파견	5	8
	비정규직 등 관련 기록철	5	59
광주지방노동청	근로자파견사업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5	5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계철	3	2
	근로자파견업체현황등	5	1
	근로자파견관계철	5	1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관리대장	3	1
	파견근로자 파견업체 관리대장	3	1
	철강화학업 총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5	1
	현대상호중공업 하도급업체실태조사철	5	1
	비정규직실태조사관련철	5	1
	비정규직사업장점검	5	1
	파견허가철 등 관련 기록철	5	28
	파견근로자사용업체대강	5	1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5	1
파견사업지도점검철 등 관련 기록철	5	7	

비정규직 노동자 연구는 대체로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 노동실태 등 노동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비정규직 관련법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¹³⁾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상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기록은 법령과 정책 수립 등에 대해서만 영구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비정규직 노동자 연구로는 김성희(2009)의 '비정규 문제의 쟁점과 비정규운동의 과제', 손정순(2009)의 '금속산업 비정규 노동의 역사적 구조 변화', 조용만(2012)의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조효래(2008)의 '사내하청 노동운동의 발생과 성장에 관한 연구', 김진구(2002)의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조상균(2010)의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있다.

곧 노동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모두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기록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곧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점검 관련 기록(‘비정규직점검찰’·‘비정규직고용사업장점검찰’ 등), 비정규직 노동실태 관련 기록(‘비정규직실태조사관련찰’ 등), 사내 하도급 관련 기록(‘사내하도급 점검찰’ 등), 파견노동 관련 기록(‘근로자파견사업관계찰’·‘파견사업 불허찰’·‘파견허가’ 등) 등이다. 특히 파견노동, 사내하도급 관련 기록이 다수 폐기되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 노동자·유년 노동자 관련 기록 선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고용과 차별, 법적 보호와 노동인권, 노동실태와 생활, 노동운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⁴⁾

〈표 21〉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록 선별 예시

기관	기록철명	보존기간	권
중부지방노동청	외국인고용사업장점검 등 관련 기록철	3	32
	외국인고용사업장현황	3	1
	외국인점검계획철	3	1
	외국인관련관계철	3	2
	외국인고용재해사업장관련철	3	3

1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로는 이해경(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백석현(1997)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대책’ 이광택(2004)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보호’, 석원정(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전형배(2010)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김광성(2011)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정영섭(2012)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운동 과제’, 설동훈(2003)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 엄한진(2014) ‘강원지역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과 일상생활’ 등을 참조.

부산지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관계철	5	1
	외국인근로자점검계획철	3	2
	외국인근로자관련	3	1
	외국인근로자점검결과	3	1
	외국인근로자 점검	5	4
광주지방노동청	외국인고용허가철 등 관련 기록철	5	45
	외국인 고용허가서철	3	71
	외국인 고용변동철	5	45
	외국인사용업체 관리카드	5	1
	(외국인)임금체불취약사업체 관리대장	5	1
	외국인근로자관계철	5	3
	외국인고용업체점검철	5	3
	외국인근로자체불관련	5	1
	외국인점검결과보고철	5	2
	외국인다수고용(현장)	5	1

그러나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는 2003년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외국인력 제도개선 등만 영구기록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1>에서 보듯이 지방노동청의 외국인 노동자 노동현장 점검 기록(‘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점검’, ‘외국인근로자점검계획철’ 등), 고용허가 기록(‘외국인고용허가철’ 등) 등 고용과 노동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록은 외국인 노동자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유년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등 유년노동 보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⁵⁾ 지방노동청 폐기 기록 가운데에는 유년노동자 보호 관련 기록, 사업장 지도점검 기록(광주지방노동청의 ‘연소자보호관련철’, ‘연소근로자지도점검철’ 등)이 존재한다. 이들 기록에 대해서도 장기 보존할 필요가 있다.

15) 조정하(2008)의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 참조.

5. 맺음말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노동사 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있는 기록을 생산한다. 그러나 기록평가심의를 거쳐 폐기된 기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사 관점에서 선별될 수 있는 중요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노동사 주제·행위주체에 기반 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거시적 관점의 노동운동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전국적인 수준의 노동조합 관련 기록, 총파업 관련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② 생산현장을 축으로 하여 국가·자본·노동관계를 밝히는 데 필수적인 기록도 선별해야 한다. 곧 단위 노동조합 활동을 알 수 있는 노동조합 관련 기록, 생산현장의 파업 기록, 단체교섭·단체협약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수준의 노동통제와 관련해서 지방노동청이 노동동향을 파악한 기록도 영구기록으로 분류해야 한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근로감독,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고발 관련 기록은 생산현장의 구체적인 노동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며, 지방노동청의 고유 기능과 활동을 증거 하는 기록이다.

③ 미시적 관점의 노동자 생활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체불임금, 최저임금, 산업재해, 산업재해 은폐 관련 기록도 선별해야 한다.

④ 노동자 내부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기록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곧 여성노동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고용평등, 모성보호 관련 기록, 유년노동자 관련 기록, 비정규직 노동실태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점검 기록, 비정규직 노동실태 조사 기록, 사내 하도급·파견노동 관련 기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 증가와 함께 노동인권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실

태와 관련된 기록도 선별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와 같은 기능 중심의 단일한 기록 평가·선별 체계로부터 주제를 결합한 평가·선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기준표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곧 업무분석과 기록 분석, 이를 통한 기능 도출, 기록 보존기간을 과학화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시사와 미시사 관점을 고려한 주제 기반 평가 방법론을 연구하고, '주제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기능 중심의 기록관리기준표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기록처리 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주제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연구가치 관점에서 기록평가심의회가 기록 평가·선별 업무를 수행하는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곧 기능과 주제 양자를 결합하는 기록·평가 선별전략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중요 기록이 아카이브에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 글의 한계는 지방노동청 폐기 기록에 대해 기록 건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기록철 중심으로 선별하여 예시한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승복. 2012.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노동리뷰』, 85, 68-81.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75. 『한국노동관계문헌목록』. 서울: 고려대학교.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곽건홍. 2001.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1938-1945』. 서울: 신서원.
곽건홍. 2009. 노동 아카이브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77-114.
구해근. 2008.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비평사.
권순식. 2016. 비정규직 고용과 산업재해의 연관성. 『산업경제연구』, 29(1), 169-194.
김광성. 2011.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3, 183-217.
김성희. 2009. 『비정규 문제의 쟁점과 비정규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운동연구소.

- 김승태. 2013. 『공공기관의 기록물 평가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왕배. 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서울: 한울.
- 김 원. 2007. 한국에서 '노동사 연구'란 무엇인가?—제1세대 노동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단상. 『경제와사회』, 73, 393-400.
- 김 원.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장환. 2014. 『국회 기록화 전략의 수집과 적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 준. 2010.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노동자 구술증언 속의 '향수' 또는 '과거의 낭만화'. 『사회와역사』 85.
- 김중희 편저. 1995. 『노동조합 실무—이론과 실제』. 서울: 노문사.
- 김진구. 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적용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12, 79-108.
- 김진희. 1999. 미국 노동사의 위기와 해결의 모색. 『미국사연구』 10, 29-54.
- 김태기. 1993. 『단체교섭의 절차와 기법』.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효정. 2010.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소규모 식당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1), 1-33.
- 노동조합사전 간행위원회 편. 1988. 『노동조합사전』. 서울: 형성사.
- 大河内一男, 吾妻光俊. 1970. 『労働事典』. 東京: 青林書院新社.
- 문은미. 2014. 여성노동자 50년, 여공에서 워킹맘까지. 『여/성이론』, 31, 188-20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한국노동운동관련문헌해제』. 서울: 내일기획.
- 박경순. 2002.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12(1), 91-107.
- 박옥주. 2016.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 『한국여성학』, 32(2), 217-251.
- 박지애·임진희. 2015. 디지털기록유산 평가·수집 모형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44, 51-99.
- 백석현.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대책. 『노동연구』, 13, 29-68.
- 백진아. 2002.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젠더와 사회』, 1, 41-68.
- 석원정. 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교육비평』, 10, 170-182.
- 설동훈. 2003.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진보평론』, 17, 246-269.
- 설문원. 2006. 공공업무의 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199-219.
- 손정순. 2009. 『금속산업 비정규 노동의 역사적 구조 변화: 산업화 이후 금속산업 사내 하청 노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호근. 1991.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서울: 나남.
- 신경아. 2013.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개인’의 의식. 『젠더와 문화』, 6(2), 215-252.
- 신권철. 2013. 노사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노동법연구』, 35, 267-304.
- 안병직. 1997.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서울: 까치글방.
- 엄한진. 2014. 강원지역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과 일상생활. 『아세아연구』, 57(4), 174-214.
- 오상봉. 2016.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제도, 개선방안. 『노동리뷰』, 130, 51-56.
- 오성진. 2004. 공공기록물 분류체제의 변화연구: 경제기획원·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숙 외. 2011. 『나, 여성노동자 1』. 서울: 그린비출판사.
- 이경옥 외. 2011. 『나, 여성노동자 2』. 서울: 그린비출판사.
- 이광일, 강병익, 최선화. 2003. 『한국노동운동관련문헌해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학술연구부.
- 이광택. 2004.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보호. 『법학논총』, 16, 113-149.
- 이수연. 2012.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4(2), 59-85.
- 이옥지, 강인순. 2001.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서울: 한울.
- 이은진. 1999. 『노동자가 빠진 수렁: 국가와 시장』.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 이혜경. 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가을), 89-113.
- 이화령. 2016. 『기록관리기준표 연구: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신철. 2012.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에 대한 새로운 고찰. 『산업관계연구』, 22(1), 55-77.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0. 『단체협약 모범안 해설』. 서울: 돌베개.
- 전순옥. 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1970년대 한국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 서울: 한겨레신문사.
- 전형배. 2010.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노동법논총』, 18, 125-157.
- 정영섭. 2012.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운동 과제. 『인문과학연구』, 39, 23-44.
- 정은봉. 2013. 『거시적 차원의 기록 선별을 위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백. 1991.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서울: 한길사.
- 제갈현숙. 2014. 생활임금과 저임금 여성노동자: 대안 임금정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7(2), 109-145.
- 조돈문. 201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현상과 인식』, 35, 43-74.
- 조상균. 2010.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 111-134.

- 조용만. 2012.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42, 1-33.
- 조정하. 2008.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 『서강법학』, 10(1), 219-253.
- 조효래. 2008. 사내하청 노동운동의 발생과 성장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14(1), 125-165.
- 최은계. 2009.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사로. 『노동사회』, 143, 77-90.
- 최장집. 1997.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서울: 나남.
-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 최재희. 2014.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153-175.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3. 『산업사회학 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현재열, 김호연, 양상현. 2007. 지역 노동사 및 노동운동사 연구를 위한 구술사의 가능성. 『역사와경계』, 62, 191-235.
- 황용연. 2011. 복수노조시대의 노사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1(3), 33-57.
- Tilly, Louise and Scott, Joan. 1987.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Routledge
(김영, 박기남, 장경선 역. 2008. 『여성, 노동, 가족』. 서울: 후마니타스).